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변경보고 신설〉

■ 박대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081호)

2022.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변경보고 신설	4
2. 거짓 변경보고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9
※ 참고자료	13
1. 인증·변경인증·변경내용 보고 현황(‘18~’20)	13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관련 부품(시행규칙 별표20)	14
3. 변경인증·변경내용 보고 제도 해외 사례(한국, 미국, 유럽)	15
4. 현행 과징금의 부과기준	16

I. 제안경위

2021년 8월 17일 박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위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변경보고를 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

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또한,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의무 위반의 실질에 부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더 충실한 규제 체계를 구현하고 상·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래에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변경보고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48조제3항).

나.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제1항제2호).

다.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시 배출가스량 증가 없는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중요사

항 외의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안 제94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2).

라. 현행법 제91조제4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로 규정하므로, 변경보고 제도를 제48조제2항의 변경인증과 별도로 제48조제3항으로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Ⅲ. 검토의견

1.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변경보고 신설

개정안은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을 변경해도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이 아닌 사항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u>사항</u> 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u>사항(이하 이 조에서 “중요사항”이라 한다)</u> -----.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가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인 증방법, 변경보고----- -----.

자동차제작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제작차에 대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¹⁾에 부합한다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²⁾는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을 세 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³⁾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법 제 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표] 현행 법령에 따른 변경인증 및 변경내용 보고제도

변경 항목		유형	벌칙	처분
■ 중요한 사항 (대기법 시행규칙 제67조) - 배기량 -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공차중량 (10% 이상 증가) -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위치 및 용량 -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 (배출가스 전환장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블로바이가스환원 장치, 2차 공기분사장치, 연료공급장치, 점 화장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흡기장치)	배출가스 증가	변경인증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매출액 5% 이내 과징금
	배출가스 미증가	변경보고 ※ <u>보고시 변경인증 같음</u>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매출액 1.5% 이내 과징금
■ 그 외의 사항 - 치명, 공차중량(10%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우), 차량총 중량, 차량크기, 타이어, 도로부하계수, 소음기, 센서 구 성 부품,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정상작동 확인 2차/3차 모니터링 로직 추가 등				

출처: 환경부

이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현행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출가스 인
증내용 “변경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요사항 변경이라도 배출가스
증가가 없어서⁴⁾ 변경인증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적은 경
우가 있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이라도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적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4) 2020년 ‘국내 중소형 승용’ 변경보고 284건 중 252건이 중요사항을 변경해도 배출가스 양이 증
가하지 않는 변경내용 보고에 해당하였음.

고, 시행규칙에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인증 의무를 변경보고 의무로 완화하고 있어서 법체계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⁵⁾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변경인증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변경내용 보고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와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령 체계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 방식은 변경인증과 변경보고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봄.

5)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 증가가 없는 경우’에 변경보고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단지 변경보고만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절차를 완화해 준 것으로 변경인증 의무와 별도로 시행규칙에 의해 새로 창설된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8고단155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6588판결, 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도6252 판결 등), 해당 사건들에서 피고인들은 “변경보고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된 것에 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인증의무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음.

2. 거짓 변경보고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개정안은 변경보고 규정을 신설하면서 자동차제작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 변경보고를 하거나 변경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배출가스가 증가하지 않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안 제94조제1항제1호 신설),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 보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4항제3호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 ----- ----- ----- ----- -----.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2. -----

현행	개정안
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③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 2. (생략)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3의2.·3의3. (생략)	----- ----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 3. 제48조에 따라 인증,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한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 -----. 1.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8조제4항----- ----- 1의3.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3.·3의4. (현행 제3호의2 및 제 3호의3과 같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가스 증가가 없는 중요사항 변경보고’ 또는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4호6)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 제5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됨.

그러나 ‘배출가스 증가가 없는 변경’이거나 ‘중요한 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표] 현행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변경 내용		의 무	벌 칙	과 징금
중요사항 변경	배출가스 증가	변경인증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매출액 5% 과징금
	배출가스 미증가	변경보고		■ 매출액 1.5% 과징금
그 외의 사항 변경		변경보고		

주: *개정안은 매출액의 5% 이하 과징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의 가중부과계수를 0.3으로 정하고 있어 1.5%로 표현함.

6)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이에 개정안은 변경인증,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중 배출가스 증가가 없는 변경 보고, 중요한 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행위를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해당 의무의 입법 목적 및 보호법익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다만,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제재가 각 의무위반 행위에 비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표] 배출가스 인증 관련 의무 위반시 제재 비교

의무 위반 사항		현 행	개 정 안
인증	미이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과징금	현행과 동일
	거짓·부정	●과징금	
	인증내용과 다른 자동차 제작·판매	●과징금	
변경인증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현행과 동일
	거짓·부정	●과징금	현행과 동일
	인증내용과 다른 자동차 제작·판매	없음	과징금
변경보고	미이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500만원 또는 100만원)
	거짓·부정	●과징금	현행과 동일
	보고내용과 다른 자동차 제작·판매	없음	과징금

개정안은 변경보고가 배출가스인증제도의 행정적 관리·감독을 위한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보고 미이행시 부과되는 벌칙을 과태

료로 하향조정하면서도, 거짓·부정한 변경보고나 변경보고 내용과 다른 자동차 제작·판매에 대해서는 변경인증 의무위반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인증·변경인증·변경내용 보고 현황('18~'20)

연도		2020					2019					2018				
		중·소형		대형		계	중·소형		대형		계	중·소형		대형		계
		승용	화물	승용	화물		승용	화물	승용	화물		승용	화물	승용	화물	
국내	인증	49	6	14	1	70	43	17	12	0	72	82	1	4	1	88
	변경인증	83	0	4	9	96	70	1	21	16	108	101	5	10	15	131
	변경내용 보고	284	62	113	141	600	233	17	45	76	371	137	5	100	77	319
	소계	416	68	131	151	766	346	35	78	92	551	320	11	114	93	538
수입	인증	195	2	12	12	221	213	2	2	12	229	100	1	2	14	117
	변경인증	111	1	0	18	130	125	1	3	30	159	124	0	2	4	130
	변경내용 보고	483	5	2	75	565	226	0	10	73	309	167	0	9	65	241
	소계	789	8	14	105	916	564	3	15	115	697	391	1	13	83	488
합계		1,205	76	145	256	1,682	910	38	93	207	1,248	711	12	127	176	1,026

자료: 환경부

【참고자료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관련 부품(시행규칙 별표2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8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별표20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별표13

장 치 별 구 분	배 출 가 스 관 련 부 품
1. 배출가스 전환장치 (Exhaust Gas Conversion System)	산소감지기(Oxygen Sensor),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ystem including dosing module (요소분사기), Supply module(요소분사펌프 및 제어장치)], 질소산화물저감촉매(De-NOx Catalyze, NOx Trap), 재생용가열기(Regenerative Heater)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xhaust Gas Recirculation : EGR)	EGR밸브, EGR제어용 서모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EGR 쿨러(Cooler)
3. 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 (Evaporative Emission Control System)	정화조절밸브(Purge Control Valve), 증기 저장 캐니스터와 필터(Vapor Storage Canister and Filter)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 PCV)	PCV밸브
5. 2차공기분사장치 (Air Injection System)	공기펌프(Air Pump), 리드밸브(Reed Valve)
6. 연료공급장치 (Fuel Metering System)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 ECU), 스로틀포지션센서(Throttle Position Sensor), 대기압센서(Manifold Absolute Pressure Sensor), 기화기(Carburetor, Vapriizer), 혼합기(Mixture), 연료분사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Fuel Pressure Regulator), 냉각수온센서(Water Temperature Sensor), 연료펌프(Fuel Pump), 공회전속도제어장치(Idle speed control system)
7. 점화장치 (Ignition System)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 다만, 로터 및 캡 제외한다.
8.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On Board Diagnostics)	촉매 감시장치(Catalyst Monitor), 가열식 촉매 감시장치(Heated Catalyze Monitor), 실화 감시장치(Misfire Monitor),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Evaporative System Monitor),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Secondary Air System Monitor), 에어컨계통 감시장치(Air Conditioning System Refrigerant Monitor), 연료계통 감시장치(Fuel System Monitor), 산소센서 감시장치(Oxygen Sensor Monitor), 배기관 센서 감시장치(Exhaust Gas Sensor Monitor),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Monitor), 블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System Monitor), 서모스태트 감시장치(Thermostat Monitor), 엔진냉각계통 감시장치(Engine Cooling System Monitor), 저온시동 배출가스 저감기술 감시장치(Cold Start Emission Reduction Strategy Monitor), 가변밸브타이밍 계통 감시장치(Variable Valve Timing Monitor), 직접오존저감장치(Direct Ozone Reduction System Monitor), 기타 감시장치(Comprehensive Component Monitor)
9. 흡기장치 (Air Induction System)	터보차저(Turbocharger, wastergate, pop-off 포함) 배관측로밸브[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s)], 덕팅(ducting), 인터쿨러(Intercooler), 흡기매니폴드(Intake manifold, 吸氣多岐管)

자료: 환경부

【참고자료 3】 변경인증 · 변경내용 보고 제도 해외 사례(한국, 미국, 유럽)

구분	한국	미국	유럽
변경인증 대상	배출가스 부품 등 주요 변경사항 (8가지 사항을 명시)	인증서상 신규차종 구분이 필요한 모든 변경 사항	인증 제출 서류 내 모든 변경 사항
변경인증 시점	사전 또는 동시	사전(in advance of) 또는 동시(concurrently)	즉시(without delay)
변경내용 보고 대상	배출가스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배출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추가 시험이 요구되지 않거나, 형식승인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 법령에 명확히 규정 되지 않은 관습
변경내용 보고 시점	사전 또는 동시	배출 기준을 여전히 만족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가능 ※ (Guidance) 그간 규제 준수를 잘 이행한 업체에 한하여, 차년도 1월까지 사후보고 허용 다만, 실제 운영 시에는 제작사가 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letter를 통해 EPA에 즉시 알리고 있음 ※ (참고)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동일 차종이라도 매년마다 인증 갱신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보고하는 시스템	즉시(without delay) ※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단순 변경 사항은 사후보고를 용인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40 CFR Part 86.1842~1844 (사후보고는 US EPA guidance("14.11)에 규정)	EC Directive 2007/46/EC

자료: 환경부

【참고자료 4】 현행 과징금의 부과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2)

○ 과징금 산정방법=매출액×부과요율×가중부과계수

1. 가중부과계수 ('18.1.1 시행)

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의 종류	가중부과계수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가.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1.0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1.0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변경인증	1.0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변경보고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 변경인증 미이행 ※ 변경인증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	0.3 ※ 변경내용 보고 미이행 ※ 변경내용 보고와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

2. 시기별,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요율

대기법 적용일		~2016.7.27.	2016.7.28. ~ 2017.12.27.	2017.12.28. ~
부과요율		매출액 3%	매출액 3%	매출액 5%
과징금	변경인증 미이행	3% x 0.5 = 1.5% (구 제56조제1항제2호)	3% x 0.5 = 1.5% (구 제56조제1항제2호)	5% x 1 = 5% (현 제56조제1항제3호)
	변경내용 보고 미이행			5% x 0.3 = 1.5% (현 제56조제1항제3호)
	거짓·부정한 변경인증	3% x 0.5 = 1.5% (구 제56조제1항제2호)	3% x 0.5 = 1.5% (구 제56조제1항제2호)	5% x 1 = 5%
	거짓·부정한 변경내용 보고			(현 제56조제1항제2호)
	변경인증과 다르게	3% x 0.5 = 1.5% (구 제56조제1항제2호)	3% x 0.5 = 1.5% (구 제56조제1항제2호)	5% x 1 = 5% (현 제56조제1항제3호)
	변경내용 보고와 다르게			5% x 0.3 = 1.5% (현 제56조제1항제3호)

자료: 환경부